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3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8.

발 의 자 : 한정애 · 조인철 · 박홍근
서영석 · 임오경 · 부승찬
김예지 · 이학영 · 송옥주
강준현 · 손 술 · 이병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유기·유실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의 구조·보호 및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여 매달린 동물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령상 동물 구조·보호조치에 경찰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 구조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에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보호의무주체에 경찰관서를 추가하며, 동물학대 및 구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강화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4조 및 제97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동물을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찰관서의 장이 동물을 보호 중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제5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구조·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동물을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시장·군수· <u>구청장</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 <u>구청장</u> <u>및 경찰관서의 장은</u> ----- ----- ----- ----- ----- -----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
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
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② 시·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
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
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
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③ 시·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
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

1. ~ 3. (현행과 같음)

② -----구
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③ -----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제97조(벌칙)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신설>

9. ~ 12. (생략)

⑥ (생략)

----- . 다만, 경찰관서의장이 동물을 보호 중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경찰관서의장은-----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구조·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한 자

9. ~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